

의안번호	제930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0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함(안 제1조).
- 위임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명 오기를 정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4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건축법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에 도의회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함(안 제4조제3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 공유재산 취득 시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명시함  
(안 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나. 관련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9명”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위원 5명”을 “민간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개정) 규정은 2025년 11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충청북도 <u>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u> <u>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u> <u>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u> <u>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u> <u>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3조(관리사무의 위임)</b>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b>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b>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u>9명</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관리사무의 위임)</b>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b> ①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북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u>10명 이상 15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p>

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하는 민  
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당연  
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  
장, 도시계획·건축업무 담당과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③ ~ ⑨ (생략)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간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  
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하는 민  
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도시계획·건축업무 담당과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2명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  
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3.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

취득·처분

2. 3.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대상지 선정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를 말



함)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2. ~ 9. (생략)

함)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2. ~ 9.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목적에 법령의 위임을 명시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정수 변경, 첨부서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